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87호
- 나. 제 안 자 : 이준형 의원 외 11명
- 다. 제출일자 : 2018년 10월 17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인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시민의 정보 제공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임원의 임기 규정(안 제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제4조 제3항),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제8조 제1항).
- ‘지방 출자·출연법’이 임원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됨.
- 이처럼 ‘지방 출자·출연법’에서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의적으로 조례나 정관에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음.

<임원의 임기 규정 현황>

규정 형식	조례	정관
기관수	10개	8개
기관명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관광재단, 50플러스 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장학재단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 조례상 임원의 임기 규정 현황은 <붙임자료 2> 참조

-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서 임원의 종류(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정수 등을 정하고 임원의 임기 등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며(제7조), ‘정관’ 제10조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상향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 임원 운용 체계에 부합해 내용상 문제는 없음.
- 또한, 임원의 임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이므로 이를 내부 규정인 ‘정관’보다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시해 의회의 입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 2180-8055

<붙임자료 1>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붙임자료 2> 조례상 임원의 임기 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임원 임기 규정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p>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p>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p> <p>②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p> <p>③ 대표이사는 상근이사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p>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p> <p>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4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p> <p>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과 시 교육청 관련 실·국장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p> <p>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시장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p> <p>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p> <p>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p>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원장은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 ③ <u>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④ 임원의 정수,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u>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u>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u>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u>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u>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u>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u>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u>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p>10</p>	<p>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p> <p>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③ <u>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u></p> <p>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p> <p>⑤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	---	---